

No. 36

행정 명령

**통근 열차, 버스 및 페리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뉴저지 및 코네티컷 경찰관을 철도 경찰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비상 선언**

수 많은 근로자들이 주간 철도, 버스 및 페리 시스템을 포함한 Mass Transit Systems를 이용하여 뉴욕주와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사이를 통근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교통수단에 대한 향상된 법률 집행이 필요합니다.

2005년 런던과 2004년 마드리드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리스트들은 폭발성 장치 및 기타 장치를 사용하여 대중교통 및 민간교통 수단을 공격했으며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확인된 위협이 없지만, 뉴욕주, 뉴저지주 및 코네티컷주 사이의 대중교통 체계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대상물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Najibullah Zazi와 공모자, 2010년 5월 Faisal Shahzad와 공모자의 실패한 범죄 계획, 2011년 11월 Jose Pimental, AKA Muhammad Yusuf의 체포를 포함하여 뉴욕에서 수 차례 발생한 공격 및 그 시도는 뉴욕주를 상대로 테러리스트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의 테러리스트 위협은 2009년 크리스마스에 디트로이트 경우 항공기 폭발 계획, 2010년 11월 오레건주 포틀랜드의 현지 폭력 극단론자에 의한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행사장 폭파 계획, 2010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크리스마스 쇼핑 인파로 만원이 된 매장을 자살 폭탄 테러범이 공격한 사건, 2010년 12월 영국에서 연말연시에 공격 계획을 세웠던 12명을 체포한 것 등을 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 (UBL)의 사망은 그 후 발생한 주요 알카에단 지도자 몇 명의 제거와 함께 테러리스트가 UBL의 사망에 대한 복수로서 연말연시에 공격을 하도록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코네티컷주와 뉴저지주는 뉴욕주를 왕복하는 통근 열차, 버스 및 페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각 주의 정치 경찰을 배치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코네티컷주 경찰, 코네티컷주 카운티나 자치회의 경찰, 뉴저지주 경찰, 뉴저지주 카운티나 자치회의 경찰 중에서 맹세를 한 사람들은 코네티컷주와 뉴욕주 또는 뉴저지주와 뉴욕주 사이의 관할 경계를 넘을 경우 해당 법률 집행 기관의 관할권 이내로 제한됩니다.

뉴욕, 뉴저지 및 코네티컷은 모두 자매 결연을 맺은 주간에 상호 지원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비상 관리 지원 협약 (Emergency Management Assistance Compact: EMAC)의 회원입니다.

EMAC는 이 조약에 따라 응급 인력을 제공 받는 주의 관할 경계 내에서 활동하는 파견된 응급 인력은 응급 서비스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주에서 부여 하는 것과 동일한 권한 (파견된 주가 특별 허가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는 제외), 임무, 권리를 가지도록 합니다.

자매결연 주에서 제공한 경찰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들이 뉴욕주 관할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체포 권한을 포함한 경찰관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철도법 § 88에 따라 경찰국장은 지정된 상황에서만 특정 제한사항에 따라 철도 경찰관을 지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한 상황과 제한사항은 자매결연 주에서 파견되어 철도 경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약한 경찰관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며, 테러리스트의 공격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행정법 § 29-a는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그 파트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이 재난 응급 상황에 협력하고 다른 조건이나 단서를 포함시키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그 파트의 권리 중지, 변경 및 수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 및 뉴욕주 법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재해가 절박하며 피해지역의 지방정부가 지원이 없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을 정도로 재해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2-B조 섹션 28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본인은 2011년 12월 31일을 기하여 뉴욕주 재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또한** 뉴욕주 헌법 및 행정법 2-B조 섹션 29-a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파트 등의 특정 조항, 뉴욕주 재해 비상사태 기간의 담당 기관을 일시적으로 중지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에 의거하여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본인은 2011년 12월 31일 오전 12시 1분부터 2012년 1월 2일 오전 12시 1분까지 코네티컷주의 서약한 경찰, 코네티컷주의 모든 카운티나 지자체의 서약한 경찰, 뉴저지주의 서약한 경찰, 뉴저지주의 모든 카운티나 지자체의 서약한 경찰을 철도 경찰관으로 지명할 목적으로 다음의 법률을 일시 중지 및 수정합니다:

철도법 섹션 88, 하위절 1은 집행기관, 운송회사 또는 선박회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철도 경찰관을 뉴욕주 경찰국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정지를 하며, 주지사가 코네티컷주의 서약한 경찰, 코네티컷주의 모든 카운티나 지자체의 서약한 경찰, 뉴저지주의 서약한 경찰, 뉴저지주의 모든 카운티나 지자체의 서약한 경찰을 철도 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뉴욕 및 뉴저지 항구 관할 기관(Port Authority) 또는 그 하위 기관, New Jersey Transit 또는 그 하위 기관이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고 있는 모든 철도와 버스 시설 및 재산, 뉴욕주를 왕복하며 승객을 운반할 수 있는 페리를 포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됩니다.

철도법 섹션 88의 하위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및 17은 이 명령을 발효시키기 위해 필요하므로 집행 정지를 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2011년 12월 31일 오전 12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2012년 1월 2일 오전 12시 1분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천 십 일년 십 이월 \_\_\_\_ 일 Albany시에서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 및 주 인장의  
권한에 의해 이를 발표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실장